

해양경계획정 원칙 비교연구

- 완전(万震)¹⁾

개요 : 2004년부터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는 많은 이견이 있었고 주된 논점이 되었던 것은 양측의 경계획정 원칙에 대한 주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은 형평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한 중국 쪽 대륙붕은 자연적으로 오키나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배타적 경제수역도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경계획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중간선으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눌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계 획정의 주요 원칙은 이론과 실천의 이중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1. 자연적 연장원칙

소위 자연적 연장원칙은 자연적 사실에 기초하여 대륙붕이 물에 잠겼더라도 대륙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 있으면 해당 육지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저지역은 해당 연해국이 통치권을 가진 영토의 일부가 된다. 즉 해저 지역은 물에 잠겨 있다 하더라도 영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 권리를 반영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자연적 연장원칙은 대륙붕과 관련된 모든 법률규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연해국이 그 지역 자원의 개발과 탐사를 위해 대륙붕에 행사하는 주권 권리를 일종의 고유 권리라고 명명했다. 여기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연적 연장원칙을 긍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붕 법률제도에서 자연적 연장원칙이 지도적인 원칙이라는 점 혹은 원칙적인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이 대륙붕 해양제도에서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완전 자연연장 원칙이다. 만약 자연적 연장이 200해리를 넘지 않고 연해국 육지 영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완전 자연연장을 이룬다면 계속적으로 200해리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대륙붕이 천연 해구로 인해 단절이 된다면 그 대륙붕의 범위는 200해리 이내로 제한이 된다.

2. 등거리선 원칙

1) (1976~)상하이 정법학원, 국제공법 연구

1969년 북해 대륙붕 경계획정안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거리 원칙은 대륙붕 협약 조인국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며 관습 국제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등거리 원칙의 적용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이 되는 강제력을 가진 기본 경계획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93년 그린란드 안마옌(Jan Mayen) 섬 경계획정안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1977년 영-불 대륙붕 사례를 언급하며 1977년 중재안에 따라 1958년 대륙붕 협약 제6조를 해당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련된 협약이든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행이든 등거리선과 중간선 원칙은 대륙붕 경계획정의 국제사법적 관습법 혹은 일반 국제법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3. 형평원칙

형평원칙은 국제 관습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평 원칙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어떤 다른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이나 방법에서 원칙에 부합할 때에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형평원칙은 결과의 공정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안에서 형평원칙은 법적 원칙 그대로 적용돼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 없었다. 형평 원칙은 형평을 추상적인 정의로 단순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법률적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적용은 항상 대륙붕 경계획정 법률제도 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이념과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재판소의 판례를 볼 때 형평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이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경계획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는 국제법과 중재 관행을 통해 필자는 형평 원칙에는 결과의 형평, 모든 관련 사정에 대한 고려, 경계획정 방법의 비강제성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형평원칙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뚜렷한 이론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북해 대륙붕 사건은 국제사법체계로 해결한 첫 번째 대륙붕 경계획정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원칙에 따라 일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관념을 제시하였다. 그 후의 사법적 관행에서 여러 차례 이러한 관념에 대해 긍정하였다. 형평원칙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이미 확실한 지위를 얻었고 하나의 국제 관습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 판례는 대륙붕 경계획정 관행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해양경계획정 관련 법률의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판결 이후 관련 국가는 20여 개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조약에 조인을 하였고 이러한 조약의 대부분은 확실히 적용하거나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형평원칙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8년 영-불 대륙붕 사건의 중재법원은 등거리 원칙은 특수사정 원칙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그 사정은 ‘특수’ 한 상황일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등거리 원칙은 형

평원칙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 즉 불공평한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계획정의 방식이든 그 목적은 모두 적절히 각 특정 조건의 지리 및 기타 관련사정을 반영하여 공평한 경계획정을 이루기 위함이다.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 사례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하 협약) 제83조²⁾의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새로운 사안에서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해관계국들에게 제공할 어떤 명확한 기준을 배제하였다. 대륙붕 경계획정에 사용될 수 있는 원칙과 규칙은 공정한 결과를 만드는 데 적용되는 원칙과 규칙이다.

4. 해양경계획정 적용의 대표적 사례

① 1969 북해 대륙붕 사건

1966년 연방 독일, 네덜란드와 덴마크간에 북해에 있는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로 발생한 쟁의이다. 유럽 북해는 1959년부터 네덜란드 해역과 가까운 해역에서 대형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지역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연해국들은 대륙붕의 탐사와 자원개발을 중시하게 됨으로서 분쟁으로까지 가게 된 사건이다. 결국 1967년 이 경계획정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법원에 판결을 구하면서 “독일,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속하는 대륙붕의 경계를 나눌 때 어떤 국제법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언급하며 이전에 법원이 제시했던 원칙과 규칙을 확실히 밝혀 달라고 제소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투표를 통한 결정과 심리를 병행해서 진행하였고 1969년 2월 20일 그 판결을 공포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관련국 사이에 경계획정에 적용된 국제법 원칙과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협상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것.

형평원칙에 따라 모든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구성하기 위해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모든 대륙붕의 부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육지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자연연장 부분을 보존한다.

(2) 규정을 적용할 때 경계획정에 각국이 중첩하는 지역이 있으면 각국이 연합 관할권을 합의하거나 이전에 서로 중첩된 지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것 혹은 어떤 제도가 결정되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된 비율에 따라 나눈다.

(3) 협상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2) 제 83 조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15부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문제는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국 해안의 일반적인 구조 및 어떤 특별한 혹은 두드러지는 해안 성질, 이미 알고 있거나 확정된 대륙붕의 자연 지질 구조와 자원, 합리적인 비례의 요소인데 여기에서 이 비례란 형평 원칙에 따라 연해국에게 대륙붕의 범위를 부여하여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해안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 한 후 같은 해역 내 인접국 간 대륙붕을 효과적이고 실제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위의 3국도 결국 판결에 따라 대륙붕 경계확정을 하여 분쟁을 해결했다.

한 북해 대륙붕 경계확정안은 형평원칙을 대륙붕 경계확정의 주요 적용 원칙으로 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중 비교적 유명한 판례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거리 원칙, 등거리 특수사정 원칙을 국제 관습법의 일부로 여기는 관점과 등거리 원칙을 ‘대륙붕 협약’ 제정 이후 형성된 국제 관습법으로 여기는 관점에 대해 반박하였다. 또한 관련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한 각국의 대륙붕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기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동시에 같은 해역 내 인접국들이 대륙붕에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계확정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중첩되는 지역에 중요한 경계확정 세칙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진국 간 대륙붕 분쟁 해결의 좋은 사례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완전히 똑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② 1984 미국 캐나다 메인만 사건

이 사례에서 경계선을 최종 확정할 때 캐나다에 있는 머차이어스실 섬(Machias Seal Island)과 머드 섬(Mud Island)에는 반효력을, 미국의 난터켓(Nantuket Island)섬에는 완전한 효력을 줬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머차이어스실 섬과 머드섬이 오랫동안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위치가 해안으로 돌출해 있어 반효력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양국 해역 면적과 해안선 길이 비율에 영향을 미쳐 결과가 불공정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머차이어스실 섬이 이 지역에 해양경계확정에 절반의 효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난터켓 섬은 그 면적(74km), 인구(수천에 달함), 그 자체의 중요성(미국 동부의 유명한 피서지)과 그 위치(미국 연안에서 15해리 떨어져 있고 양국 본토 해안 사이에 있지 않음) 때문에 완전한 효력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이 섬들에 대한 효력부여 관련 내용은 국제사법재판소 특별재판소가 본안 심리에서 공정한 결과를 일관되게 강조하며, 특정한 법률 원칙과 실제적인 경계확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해양경계확정 사례는 해양경계규칙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